의 안 번 호

721

[울산광역시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로 보** 고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09. 9.30 · 박성민의원외 3명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09. 10 . 6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09. 10. 12

2.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근거하여 동법 제47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시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고,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유사 시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응급의료 지원내용(안 제3조)
 -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안 제4조)
 - 중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 설치 권장 시설:
 - 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 ⇒ 일정규모이상의 업무시설·공연장·대규모점포·예식장·실내체육관,학원
 -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

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 면적이 1천제곱 미터 이상인 시설
- 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제2조제10호에 의한 영화 상영관
-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집합 장소
- 재정적 지원(안 제5조)
 - 응급처치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제4조제1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
- 설치 및 권장(안 제6조)
 -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 설치비용 지원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
- 응급처지 교육(안 제7조)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응급 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4. 근거법규 : 붙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7조의2,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6 조의2
- 공중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 노인복지법 제34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5. 참고사항

● 타자치단체 조례

구분		조 례 명	제정(공포) 일 자	비고
기초	서울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09 .3.10	
	서울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09 .6.22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09.8.10	
광역	광주 광역시	광주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09 .7.15	
	인천 광역시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09.7.27	

- 주요 의무 설치 대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법제47조의2➡공공보건의료기관,소방 구급차,여객항공기,철도 차량중 객차,선박(20톤 이상),
 - 시행령제26조의2➡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대합실,항만대합실, 카지노시설, 경마장, 경주장(경륜·경정법),교도소 및 구치소
 -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설치 대상-다중이용시설

구분	시 설	ᄉᄘ	ИII	
	시설명	소재지	수량	비고
설치 시설	중구청	중구 복산동	1	
	중구 보건소	중구 남외동	1	
	중구 사회복지회관	중구 남외동	1	
	중구 노인회관	중구 반구동	1	
	중구 노인복지회관	중구 남외동	1(향후)	
	구민 문화체육센터	중구 성안동	1(")	
	구민운동장	중구 성안동	1(")	
	HOME PLUS	중구 복산동	1	대형점포
권장 시설	SKY 사우나(골프연습장)	중구 성안동	1	사우나,헬스장, 골프연습장
	E-MART(학성동)	중구 학성동	1	대형점포
	CGB(7관)	중구 성남동	1	영화관
	메가 박스(8관)	중구 성남동	1	영화관
	스파	중구 복산동	1	수영헬스,시우나 등
	뉴코아 아울렛	중구 성남동	1	대형점포
	교육청,경찰청,경찰서,선관위 등			

- 집행부 의견 조회 결과(2009.9.29)
 - 고가의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및 교육비 지원 시 구 재정에 부담이 되고,
 - 환자 사망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선의의 응급의 료에 대한 면책 규정이 있으나 의료분쟁의 소지가 있어 활용 빈도 가 낮을 것으로 예측됨.
 - •응급의료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자동세세동기(AED)주요 설치 장소
 - (주)시유메디칼시스템 자동제세동기 KTX 189대 설치 (2009.7.16)
 - 강남구(75대),국회(4대),인천국제공항(33대) 등
 - 울산⇒119(29대), 울산공항, 울산대병원 등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제1조 목적부터 제8조 규칙까지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근거하여 같은법 제47조 의2와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시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고,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유사시 구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보면
 - 제3조는 응급의료 지원내용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제4조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설치 권장시설 대상을 규정 하고
 - 제5조는 재정적 지원내용으로써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예

산과 중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6조는 설치 및 권장에 대한 내용, 제7조는 장비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끝으로

- 응급사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음.
- •이를 위해 유사시의 응급 상황을 대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파단되며,
- 특히, 이 조례에 의하여 한 명의 생명이라도 위급한 상황에서 구할 수만 있다면 이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구민 의 귀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례라 고 할 수 있겠음.

관 련 법 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재정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응급의료기관등에게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14>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 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가 실시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 나.「선원법」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 「소방기본법」 35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 응급의료
-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에 실시한 응급처치[본조신설 2008.6.13]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은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6.9>

-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2.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공항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 5.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12.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6조의2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법 제47조의2제1항제6 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 다. <개정 2008.10.29>
- 1. <mark>철도역사</mark>(「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 철도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 안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 한다)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 용객수가 1만 명 이상인 대합실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 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 명 이상인 대합실
- 3. **「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 명 이상인 대합실
- 4.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 6.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 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소년원법」에 따른 소년원
 - 8.「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 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 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 10.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사[본조신설 2008.6.11]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 제3조 (공중이용시설)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7.7, 2004.5.25, 2005.11.1>
- 1.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건축법」제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 2.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 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mark>대규모점포</mark>와 동법에 의한 상점 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 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을 제외한다)
- 5.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으로서 연 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에식장**
-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관람석 <u>1천</u> 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 1. <u>노인요양시설</u>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 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3.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②생략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1-2(생략)

- 3. <u>"목옥장업"이</u>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5(생략).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5.8>
-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2 -9(생략)

10. <u>"영화상영관"</u>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